

2022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5.

횡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인원	비고
총 계				10명	
2022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4명	
	9급	보 건	보 건	2명	
		시 설	일반토목	2명	
			건 축	2명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직렬 및 직급	직 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2차	
간호(8급)	간 호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60분
보건(9급)	보 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9급)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문제는 횡성군에서 자체출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1) 202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2.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위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직 급	직 렬	직 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
8급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9급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급	직 렬	직 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
9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각 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중 (기능사)일 경우 자격증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필요(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시험 일정

시 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22.01.25.(화) ~ 2022.02.13.(일) [20일간]	2022.02.14.(월) ~ 2022.02.18.(금) [5일간]	필기시험	2022.02.23.(수)	2022.03.05.(토)	2022.03.08.(화)
		면접시험	2022.03.08.(화)	2022.03.11.(금)	2022.03.16.(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황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2. 14.(월) ~ 2022. 2. 18.(금), 09:00 ~ 18:00

나. 접 수 처 : 황성군청 자치행정과(2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 우편주소 : (25220)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15 황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등기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2022. 2. 25.)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원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접수처(033-340-2073)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4.5) 탈모 상반신 사진
-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 횡성군 허가민원과 「횡성군 수입증지」구입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또는 응시수수료 동봉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3)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4) 이력서[붙임 2] 및 자기소개서[붙임 3]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4]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1부

7)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 1부

6.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불합격자에 한하여 요청 시 원본 서류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바.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황성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합격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차.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될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황성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황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